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5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2
---------------------------------------	---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6. 7. 24.
- (3) 회 부 일 : 2026. 7.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재산,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5조의2(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27.1.1.

나. 검토의견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지원기준

- ①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및 그 사업주,
②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최대 36개월 지원)
※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생애 최대 3년 지원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87,400원 범위에서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 **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시 익월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

자료 : 보건복지부

□ 이때,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자들을 말하는데¹⁾,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고

1) 단, 예술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월 보수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무제공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월 보수 8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약 4만 7천명, 노무제공자는 약 88만 5천명[보험설계사(32.1%), 쿼서비스기사(21.8%), 대리운전기사(9.0%) 순]에 이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월평균 14.8만명)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 중으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민연금법」²⁾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³⁾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⁴⁾,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현행법에 보험료 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4931-306)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단, 자영업자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료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3년 한시 사업으로 계획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경우 지원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5조의2제1항제1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일 것을, 같은 항 제2호는 재산 및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을 기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 재산과 소득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의 요건이 되는 ‘재산·소득’과 고용보험료 지원의 요건이 되는 ‘재산·소득’, 「국민건강보험법」⁶⁾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 소득’ 간 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되면 법체계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금 환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imes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② 제1항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⁷⁾는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해당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중으로, 한정된 예산제약 내에서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시행일을 2027년 7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예술인 및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보험료 발생이 감소되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향상이 기대됨.
- 다만, 안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2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보수, 재산, 종합소득)을 충족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급 받는 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가 상이⁸⁾하기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별도 요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종합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종합소득 요건이 4,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득요건은 이보다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 지원을 받게 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사회보험 간 형평성에

8)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의 범위

대한 추가논의가 있을 수 있음.

- 부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이 필요하여 법률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한의사협회

- 동 개정안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 개정안에 반대함.
- 먼저, 특정 직역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공평부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등 유사한 부담능력을 가진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규모, 재정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기존 지원제도와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재정추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